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누13310 판결
판 결 선 고 200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 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

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언론사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 A와 저녁식사를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내 출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 원고는 재해당일 점심에도 다른 신문기자와 만나 식사대접을 하면서 백세주 2병 가량을 마시기도 한 사실, A 기자는 광고담당기사이기는 하였지만 기자들의 출입처가 6개월 정도마다 바뀌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원고가 A를 만난 사실, A에 대한 접대에는 당시 주식회사 B에서 주최한 ‘브랜드아카데미’ 행사 관련 보도에 대한 사례 목적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C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C는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원고나 A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C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C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 C가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원고와 A가 업무외적인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C와 함께 신문기자인 A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